

# 글로벌인문학연구소 운영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 “글로벌인문학연구소(Global Humanities Institute)”라 칭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. <개정 2014.06.17>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 이념에 근거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, 인문학적으로 심도 있는 교양인 육성과 그를 위한 교육지원 및 학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기구

**제4조**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 명
3.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 약간 명
4. 간사 3인 <개정 2014.06.17>
5. 행정조교 약간 명

**제5조** 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전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③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**제6조** (임기) 본 연구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7조** 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.

②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.

③ 간사와 조교는 소장의 지도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

**제8조**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된다.

**제9조** (임명)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10조** (심의)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## 제4장 재 정

**제16조** 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
2.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및 연구비 <개정 2014.06.17.>
3. 회비
4. 연구기금
5. 기타

**제17조**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18조** (승인)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## 부 칙

- ① 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- ②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